

학술발표회 운영규칙

제1조(학술발표회 목적) 한국수자원학회의 정관에 맞게 지구상의 물에 관한 학술발전을 도모하며 사회공익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간의 학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담당 이사가 맡으며 필요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발표회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학술발표회 개최장소) 학술발표회 개최장소 선정은 지역적인 안배와 예산을 고려하여 준비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회장단에서 최종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학술발표회 예산 및 지출)

- ① 학술발표회의 예산은 등록비 및 관련 업계 홍보부스에 따른 참가비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 및 기업체의 후원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
- ②학술발표회의 지출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기조강연 및 초청강연자 선정)

- ①학술발표회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경우, 강연자는 고문 또는 참여회원 중에서 탁월한 공적을 남긴 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학술발표회 개회식에서 기념강연을 하는 경우, 한국 수공학계의 프론티어 정암(靜岩) 원태상 교수를 기념하여 “원태상 기념강연”으로 명명하고, 학술발표회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원태상 기념강연은 별도의 세부 운영지침을 따른다.
- ④국내 강연자인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원 등록비 면제 및 숙박비 지원)

- ①고문 및 은퇴한 참여회원의 학술발표회 등록비는 면제를 한다.
- ②학술발표회 기간 숙박비 지원은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고문 및 은퇴한 참여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 12. 15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의 일부개정은 2012. 6. 9 이후부터 시행한다.